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3. 4.(월) 조간
(인터넷) 3. 3.(일) 12:00

기술침해 피해기업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합리적인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 정부지원
  - 소송준비 중인 기업으로 대상 확대, 창업기업·소상공인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년도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전자우편(e-mail : cod@win-win.or.kr)을 통해 3월 4일부터 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책임자	과 장	정강은 (044-204-7780)
		담당자	사무관	이경우 (044-204-77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